

제237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환경교육  
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4년 1 월 3 일

여 수 시 장

2024. 1. 3.



여수시 조례 제2108호

붙임 여수시 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

## 여수시 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여수시 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여수시 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”를 “여수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1조의 제목 “(학교환경교육의 진흥)”을 “(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진흥을”을 “활성화를”로 한다.

제12조의 제목 “(사회환경교육의 진흥)”을 “(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)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진흥을”을 “활성화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1호 중 “진흥”을 “활성화”로 한다.

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고,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(환경교육강사 등 운영) ① 시장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교육 분야에 전문적인 역량을 보유한 자를 환경교육강사 등으로 선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선발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, 모집 기준과 운영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정한다.

제15조(직무교육 및 평가)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환경교육강사 등을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과 활동사항 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 평가는 전문가 또는 전문교육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.

제16조(활동지원 등) 시장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환경교육강사 등 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7조(종전의 제14조)제1항 중 “진홍”을 “활성화”로 한다.

제19조(종전의 제16조)제1항 중 “제14조”를 “제17조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b>여수시 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</b></p> <p>제11조(<u>학교환경교육의 진흥</u>) ① 시장은 학교환경교육의 <u>진흥을</u>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~ 8. (생 략) ② (생 략)</p> <p>제12조(<u>사회환경교육의 진흥</u>) 시장은 시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사회환경교육의 <u>진흥을</u>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.</p> <p>1. 어린이집, 공공기관,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의 <u>진흥에</u> 관한 사항 2. ~ 8. (생 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<b>여수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</b></p> <p>제11조(<u>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</u>) - ① ----- <u>활성화를</u> ----- ----- ---.</p> <p>1. ~ 8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2조(<u>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</u>) - ----- ----- <u>활성화를</u>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<u>활성화</u>----- -----</p> <p>2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4조(<u>환경교육강사 등 운영</u>) ① 시장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교육 분야에 전문적인 역량을 보유한 자를 환경교육강</p>

사 등으로 선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선발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, 모집 기준과 운영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정한다.

### <신 설>

제15조(직무교육 및 평가)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환경교육강사 등을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과 활동사항 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 평가는 전문가 또는 전문교육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.

### <신 설>

제16조(활동지원 등) 시장은 환경 교육 활성화를 위해 환경교육강사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4조(환경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등) 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수시 환경교육지원센터(이하 “환경교육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 · 운영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17조(환경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등) ① ----- 활성화 ----- ----- ----- 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5조 (생 략)

제16조(재정지원) ① 시장은 제14 조에 따라 설치된 환경교육지원 센터의 운영 및 사업과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비영리법인·단체 등에 대하여 그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(생 략)

제17조 (생 략)

제18조 (현행 제15조와 같음)

제19조(재정지원) ① ----- 제17조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0조 (현행 제17조와 같음)